

람

# 울산광역시 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	관	의	장	
람					



제649호 2010. 8. 25. (수)

공	고									
○ 공고	제2010-5	80ま	[웊사과역시	부구	해정기구	설치	규칙	익부개정규칙아 입번예기	$\overline{}_{2}$	$\overline{}$

\_\_\_【 안 내 문 】\_ □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□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⇒ 구 홈페이지(http://www.bukgu.ulsan.kr) → 행정정보 → 일립마당 →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

발행:울산광역시 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 219-7207 행정 7207)

####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0-580호

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8월 25일

## 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#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취지

○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업무가 생활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 담당으로 이관되고, 친환경무상급식지원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분장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사무분장 조정(신설)

- · 녹색성장 총괄업무 : 기획감사실 → 환경위생과
- · 일자리 업무 : 생활지원과 → 경제진흥과
- · 친환경무상급식 업무 : 농수산과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**2** 219-7202, fax 219-721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일부 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####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0-581호

울산광역시 북구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## 2010년 8월 25일

## 울산광역시북구청장

#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취지

○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직급·직렬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·직렬별 정원조정

## 1) 정원조정

∘ 6급: 87명 → 88명(증 1명)

- 행 정 : 49명 → 50명(증 1명)

∘ 7급: 125명 → 126명(증 1명)

- 행 정 : 61명 → 62명(증 1명)

∘ 8급: 133명 → 132명(감 1명)

- 행 정 : 53명 → 49명(감 4명)

- 시 설: 20명 → 21명(증 1명)

※ 시설(건축) 증 1명

- 녹 지 : 3명 → 4명(증 1명)

- 환 경: 2명 → 3명(증 1명)

- 공 업: 2명 → 2명
  - ※ 공업(전기) 감 1명, 공업(기계) 증 1명
- ∘ 9급: 53명 → 52명(감 1명)
  - 행 정 : 25명 → 27명(증 2명)
  - 시 설: 7명 → 6명(감 1명)
    - ※ 시설(건축) 감 1명
  - 녹 지 : 1명 → 0명(감 1명)
  - 환 경: 2명 → 1명(감 1명)
  - 공 업: 2명 → 2명
    - ※ 공업(전기) 증 1명, 공업(기계) 감 1명

#### 2) 직렬명칭 변경

- · 통신직 → 방송통신직
- · 교환직 → 전화상담직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219-7202, fax 219-721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 4. 기타

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